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1179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-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2022. 12. 2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3. 3. 8. 접수 제9609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윤동현

별지